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0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최민희・박지원・윤준병

김원이 · 신영대 · 김종민

김승원 · 이연희 · 임미애

오기형 • 백승아 • 박해철

복기왕 • 권칠승 • 박홍근

김성환 · 오세희 · 민형배

주철현 · 김민석 · 김 윤

장경태 · 전현희 · 문대림

박범계 • 이인영 • 김기표

정준호 • 박수현 • 이재정

송옥주・김 현・이수진

한정애 · 유호중 · 이병진

한민수 · 허 영 · 이재강

박희승 · 정성호 · 채현일

장종태 · 이해민 의원

(44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성 여부는 물론 직무 관련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공직자 당사자에만 해당하는 조항이며,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 혹은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해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부재함.

최근 대통령 배우자가 수백 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영상이 공개됐음에도,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 는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음.

그러나 공직자의 업무 등에 이해관계를 미치는 자들로부터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배우자를 통한 부정 청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고, 배우자의 불법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의 본 입법 취지를 공고히 하려 함.

이에 공직자는 물론 그 배우자도 직무 관련 여부와 대가성 여부에 관계 없이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 또한 "공직자등과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확대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8조 등).

법률 제 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직자등은"을 각각 "공직자등과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23조제5항제1호 본문 중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u>공</u>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u>공</u>
<u>직자등은</u> 직무 관련 여부 및	직자등과 그 공직자등의 배우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	자는
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	
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	
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	
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	② 공직자등과 그 공직자등의
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	배우자는
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	
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해서는 아니 된다.	
	<u>.</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	<u><</u> 삭 제>
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	
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	
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	
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생략)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u>공직자</u> 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u>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u>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 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22조(벌칙) ①	 <u>자</u>
	 <u>자</u>
1 <u>공직</u> 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1 <u>공직</u> 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1 <u>공직</u> 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u>는</u>
<u>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u> .	또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 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 5. (생략)

② ~ ④ (생 략)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 ④ (생 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u>공직자</u> 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u>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u>.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 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1 <u>공직자</u>
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 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 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한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생략)

⑥·⑦ (생 략)

<삭 제>

- 3. (현행과 같음)
- ⑥·⑦ (현행과 같음)